

공정위, 규제대상 기업결합범위 축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수)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규제대상 기업결합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유형으로서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와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다섯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의 유형 중 임원겸임은 통상 주식취득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지배관계가 이미 형성된 계열회사 간에 발생하거나 사외이사처럼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독립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으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1개 회사 또는 1개 기업집단 단독으로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것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Joint Venture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난 '81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지난 '97년까지 신

고된 총 3,700건의 기업결합 중 임원겸임의 경우는 전체의 6.7%에 불과한 249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회사신설의 경우는 전체의 29.8%인 1,103건이었으나 이 중 기업결합이 제한되거나 문제시된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운용상의 경험을 감안하여 다음 법 개정시에 임원겸임과 1개 회사 또는 1개 기업집단 단독의 회사설립을 규제대상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공정위는 단독 회사설립의 경우 경쟁제한 가능성에 적은 기업결합으로서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난 6월 15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업들에게는 신고서류 작성 등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결합규제대상 및 외국의 제도 ◆

■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규제대상

- ▷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으로 5가지 유형을 규정(공정거래법은 제7조제1항)
 -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의 겸임"이라 한다)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문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의 양수"라 한다)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 외국의 제도

	임 원 겸 임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미국	법에서 금지한 금융기관간의 임원겸임을 금지(클레이튼법 제8조)	Joint Venture 방식의 설립만 규제(주식취득의 일종으로 규제)
독일	피결합회사 임원의 과반수가 결합회사의 임원과 동일인으로 구성된 경우만 규제대상(경쟁제한금지법 제23조제2항제4호)	주식취득과 동일하게 Joint Venture 방식의 설립만 규제(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c)
일본	임원겸임을 제한하였으나, '98.5.22. 법 개정으로 폐지	Joint Venture 방식의 설립만 규제(주식취득의 일종으로 규제)